

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161
발의일자 및 발의자	2018년 3월 30일, 도지사
상정일자	제3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(2018년 4월 10일 상정, 의결)
심사결과	원안가결
주요내용	○ 축산산림국 사무에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·신설 하고, 동물보호 등을 전담할 과(課) 설치에 따라 정원 내에서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. [4급 : 159명 → 160명(+1) / 5급 이하 : 3,328명 → 3,327명(-1)]

기 획 재 정 위 원 회

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8년 4월 11일
기획재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3월 30일, 도지사
나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3일 회부
다. 상정일자 :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
(2018년 4월 10일 상정, 검토보고, 질의/답변, 토론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조정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AI, 구제역 발생 예방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동물보호, 동물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물방역위생과를 분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구 조정 : 신설 1과
동물방역위생과 ⇒ 동물방역위생과 + 동물보호과(신설)
- 정원 조정 (안 별표 5)
- 총 정 원 : (현행) 12,822명 → (조정) 12,822명 (변동없음)
- 일 반 직 : (현행) 3,526명 → (조정) 3,526명 (변동없음)
* 직 급 별 : 4급 +1명, 5급 이하 △1명
- 사무조정
동물보호에 관한 사항(신설) : 축산산림국

3.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오탉철)

----- [별첨 1]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첨부서류

○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[별첨 2]

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
2018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

- 본 개정 조례안은 축산산림국 사무에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
추가·신설하고, 동물보호 등을 전담할 과(課) 설치에 따라
정원내에서 일부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
-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
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음

2.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

- 조례 개정은 최근 들어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
관심이 높아지고, 이와 관련한 행정소요도 급증함에 따라 해당
사무를 축산산림국 소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
- 도는 추가 신설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축산산림국에
동물보호과를 설치할 방침임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정원의 조정은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일반직 직급(4급, 5급 이하)을 일부 조정했는데,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, 일반직 4급이 기존 159명에서 160명으로 1명 증원된 반면, 5급 이하가 3,328명에서 3,327명으로 1명 감원됐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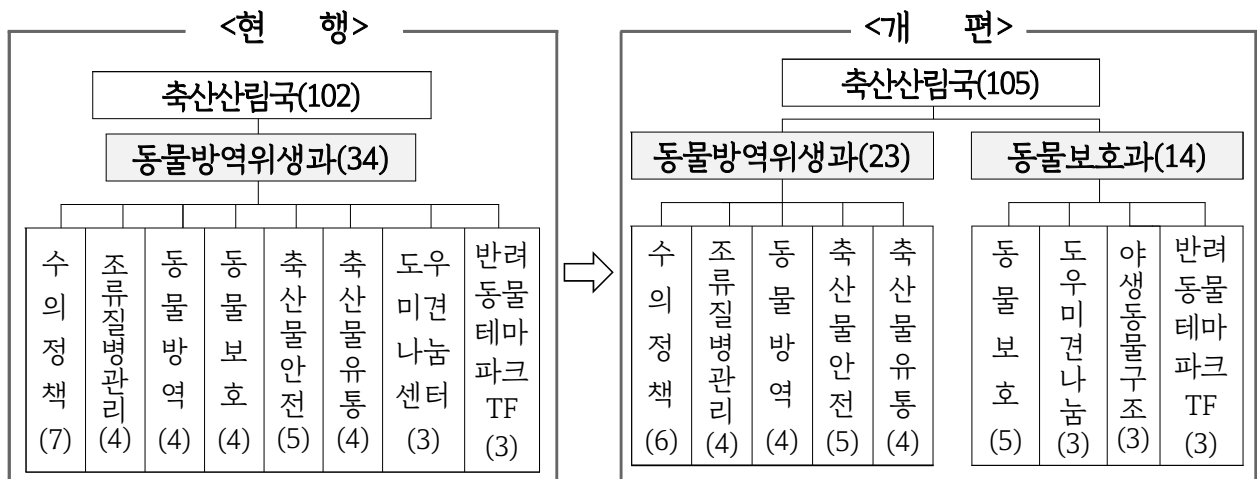
<직급별 정원 변화>

직급별	총정원	정무직	일반직	별정직	연구직	지도직	소방공무원	비고
현행	12,822	1	3,526	22	298	34	8,941	
개정	12,822	1	3,526	22	298	34	8,941	
증감	-	-	-	-	-	-	-	
내역			4급 +1 5급 이하 -1					

* 4급 : 159명 → 160명(+1) / 5급 이하 : 3,328명 → 3,327명(-1)

- 실국수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道가 설치할 수 있는 22개로 변동이 없음
- 참고로 과(課) 단위의 조정으로는, 앞서 밝힌바와 같이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업무 일부를 신설되는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해 축산산림국의 기존 사무인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,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 보호·복지업무도 원활히 추진하고자 했음

<기구의 조정(변화) 내역>



* 야생동물구조센터(동물위생시험소) 동물보호과 이체

3. 종합의견

- 금번 조례 개정안은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소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음
- 특히 동물 보호 사무를 전담할 동물보호과 신설로 동물복지 농장 추진 등 동물 보호 및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됨

별첨 2

경기도 조례 제 호

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5]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95조제1항 관련)

(단위: 명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 및 소속기관					의회사무처
		소계	본청	직속 기관	출장소 (황해경제청)	사업소	
총 계	12,822	12,589	-				233
정무직 계	1	1	-				-
도지사	1	1	1	-	-	-	-
부지사	-	-	-	-	-	-	-
일반직 계	3,526	3,299	-				227
1-2급	1	1	-	-	1	-	-
2-3급	5	4	4	-	-	-	1
3급	24	24	20	1	1	2	-
3-4급	1	1	1	-	-	-	-
4급	160	144	118	4	3	19	16
5급 이하 소계	3,327	3,118	3,118				209
전문경력관 소계	8	7	7				1
별정직 계	22	16	-				6
1급 상당	1	1	1	-	-	-	-
2급 상당	-	-	-	-	-	-	-
3급 상당	-	-	-	-	-	-	-
4급 상당	3	1	1	-	-	-	2
5급 상당 이하 소계	18	14	14				4
연구직 계	298	298	-				-
연구관	66	66	1	64	-	1	-
연구사	232	232	232				-
지도직 계	34	34	-				-
지도관	11	11	-	11	-	-	-
지도사	23	23	23				-
소방공무원 계	8,941	8,941	-				-
소방감	-	-	-	-	-	-	-
소방준감	7	7	4	3	-	-	-
소방정	42	42	8	34	-	-	-
소방령 이하 소계	8,892	8,892	8,892				-

※ 비고

1. 일반직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2.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절 행정(2)부지사	제3절 행정(2)부지사
제18조(축산산림국) 축산산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	제18조(축산산림국) ----- -----.
1.2. (생 략)	1.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
3.4. (생 략)	4.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참고조문 대비표

현행										개정안									
(별표 5)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95조제1항 관련) (단위 : 명)										(별표 5)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95조제1항 관련) (단위 : 명)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 및 소속기관					의회 사무처	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 및 소속기관					의회 사무처				
		소계	본청	직속 기관	출장소 (항해 경제청)	사업소				소계	본청	직속 기관	출장소 (항해 경제청)	사업소					
총 계	12,822	12,589	-					233	총 계	-	-	-					-		
정무직 계	-	-	-					-	정무직 계	-	-	-					-		
도지사	-	-	-	-	-	-	-	도지사	-	-	-	-	-	-	-				
부지사	-	-	-	-	-	-	-	부지사	-	-	-	-	-	-	-				
일반직 계	3,526	3,299	-					227	일반직 계	-	-	-					-		
1-2급	-	-	-	-	-	-	-	1-2급	-	-	-	-	-	-	-				
2-3급	-	-	-	-	-	-	-	2-3급	-	-	-	-	-	-	-				
3급	-	-	-	-	-	-	-	3급	-	-	-	-	-	-	-				
3-4급	-	-	-	-	-	-	-	3-4급	-	-	-	-	-	-	-				
4급	159	143	117	-	-	-	-	4급	160	144	118	-	-	-	-				
5급 이하 소계	3,328	3,119	3,119					-	5급 이하 소계	3,327	3,118	3,118					-		
전문경력관 소계	-	-	-					-	전문경력관 소계	-	-	-					-		
별정직 계	-	-	-					-	별정직 계	-	-	-					-		
1급 상당	-	-	-	-	-	-	-	1급 상당	-	-	-	-	-	-	-				
2급 상당	-	-	-	-	-	-	-	2급 상당	-	-	-	-	-	-	-				
3급 상당	-	-	-	-	-	-	-	3급 상당	-	-	-	-	-	-	-				
4급 상당	-	-	-	-	-	-	-	4급 상당	-	-	-	-	-	-	-				
5급 상당 이하 소계	-	-	-					-	5급 상당 이하 소계	-	-	-					-		
연구직 계	298	298	-					-	연구직 계	-	-	-					-		
연구관	-	-	-	-	-	-	-	연구관	-	-	-	-	-	-	-				
연구사	-	-	-					-	연구사	-	-	-					-		
지도직 계	34	34	-					-	지도직 계	-	-	-					-		
지도관	-	-	-	-	-	-	-	지도관	-	-	-	-	-	-	-				
지도사	-	-	-					-	지도사	-	-	-					-		
소방공무원 계	8,941	8,941	-	-	-	-	-	소방공무원 계	-	-	-					-			
소방감	-	-	-	-	-	-	-	소방감	-	-	-	-	-	-	-				
소방준감	-	-	-	-	-	-	-	소방준감	-	-	-	-	-	-	-				
소방정	-	-	-	-	-	-	-	소방정	-	-	-	-	-	-	-				
소방령 이하 계	-	-	-					-	소방령 이하 계	-	-	-					-		
※ 비고 1. 일반직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 2.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										※ 비고 1. 일반직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 2.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									